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57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0일

발 의 자 : 이영실, 권수정, 김경영,
김경우, 김제리, 김창원,
김화숙, 박기재, 이승미,
조상호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,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인권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직무와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사람은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함.
(안 제5조제2항)
- 나. 시장으로 하여금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.(안 제5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)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
②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5조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)</u>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</p> <p>②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
<p><u>제5조 ~ 제13조</u> (생략)</p>	<p><u>제6조 ~ 제14조</u> (현행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)</p>